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안전관리 기준 신설>

제628조의2(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등에 대한 조치) 사업주는 이산화탄소를 사용한 소화설비를 설치한 지하실, 전기실, 옥내 위험물 저장창고 및 소화약제로 이산화탄소가 충전된 소화용기 보관장소 등(이하 이 조에서 “방호구역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방호구역 등에는 점검, 유지·보수 등 작업(이하 이 조에서 “점검 등”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등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출입일시, 점검기간, 점검내용 등 출입기록을 작성하여 관리할 것.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를 활용하여 관리하는 경우와 구조적으로 지정된 자만이 출입하도록 한 경우에는 출입기록을 작성하여 관리한 것으로 본다.
3. 방호구역 등에 점검 등을 위해 출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 가. 제618조제3호에 따른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할 것
 - 나. 수동밸브나 콕을 잠그거나 차단판을 설치하고 기동장치에 안전핀을 꽂아야 하며, 이를 임의로 개방 또는 안전핀을 제거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다만, 육안 점검 만을 위하여 짧은 시간 출입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출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산화탄소의 위험성, 소화설비의 작동 시 확인방법, 대피방법, 대피로 등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교육을 통해 주지시킬 것. 다만, 처음 출입하는 자에 대해서는 출입전에 교육과 주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 라. 소화용기 보관장소에서 이산화탄소의 누출 위험이 있는 소화 용기 및 배관·밸브 등의 교체 등 작업 시에는 작업자에게 공기호흡기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할 것
 - 마. 소화설비 작동과 관련된 전기, 배관 등의 작업 시에는 작업일정, 소화설비 설치도면 검토, 작업방법, 소화설비 작동금지 조치, 방호구역 등에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작업 근로자 교육, 대피로 확보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할 것
4. 제3호 나목, 라목 및 마목에 따른 작업이 완료되어 방호구역 등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소화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상태로 변경할 것
5. 소화를 위하여 작동하는 경우 외에 소화설비를 임의로 작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해당 장소 출입구, 수동조작반 등에 누구든지 알아 볼 수 있도록 게시할 것
6. 출입구(또는 비상구)까지 이동거리가 10m 이상인 경우의 방호구역과 이산화탄소가 충전된 소화용기 100개 이상(45kg 용기 기준)을 보관하고 있는 소화용기 보관장소에는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고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할 것
7. 소화설비가 작동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질식 등 산업재해를 입을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해당 작업장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방호구역 등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할 것